

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지원업무운영규정

제정 2002. 7. 29 규정 제4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지원업무(이하 “번호판 영치지원업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번호판영치지원업무 운영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납차량”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의 납기한까지 자동차세(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법 제19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2. “번호판영치지원업무”라 함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부착된 번호판 회수를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업무범위) 번호판 영치 지원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위수탁협약서, 별도의 계획 및 방침에 의한다.

제5조(근무제도) 교통시설운영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번호판 영치 지원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과 협의하여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및 휴무제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영치방법) ①영치활동은 구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번호판 영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영치는 배속된 구청의 관할범위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동차 앞번호판을 영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앞번호판 영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뒷번호판을 영치하되 영치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과 독촉기간이 경과한 후에 영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체납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에는 동 기간 중에도 영치할 수 있다.
 4. 단말기에 차량소유자와 체납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영치하지 아니한다.
 5. 영치중 차량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번호판은 영치하지 아니하되 영치증을 교부하여 관리토록 한다.
 6. 영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관리인이 있을 경우 관리인에게 소속, 영치사유 등을 통보한 후 영치하여야 한다.
 7. 영치를 할 때에는 차량 파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②번호판을 탈착한 후에는 영치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차량소유자가 발견하기 쉬운 곳에 영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③탈착한 번호판은 차량소유자의 반환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구청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처장은 번호판영치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시 주관부서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처장은 각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치보조원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근무태만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속 구청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구청별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0조(근무지 조정) 처장은 정기적으로 영치보조원의 근무지를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기간 등은 별도 방침에 의한다.

제11조(보고 등) ①각 구청별로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대와 인력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로 반장을 둘 수 있다.

②반장은 월간 영치보조원 복무상황 및 영치실적 등을 구청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반장은 업무 수행상 문제점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